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2월 20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2월 20일

3. 제안 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및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공동출자방식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교육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둠 (안 제12조)
-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의 민간전문가,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5. 검토 의견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 9. 16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세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안이 제15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 제4조의 “금융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 제5조 “입지보조금” 제6조 “고용보조금”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고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8조 “보조금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에 대한 도 및 시군별 부담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9조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을뿐아니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유재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든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 제1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설”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 제1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등”은 기존에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 시행하여야 함에도 별도 규정한 이유와
- 제16조 “외국인투자지원센타”설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제11조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 제2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항의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정한다고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부담기준등 개별조례를 정비할 것은 개별로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비하되 시군별 부담기준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